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보건복지부

목 차

I. 자살예방교육 개요	3
II. 자살예방교육 안내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6
2. 교육내용 및 횟수	6
3. 교육방법	7
4. 결과보고	9
III. 부록	
<붙임1>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12
<붙임2> 전체 활용가능한 프로그램	13
<참고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16

자살예방교육 개요

자살예방교육 개요

□ 교육목적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위험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 ▶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대상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0조]

- 의무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보건복지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국가 및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보건복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input type="checkbox"/>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대상: 대학교,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종사자

구분	대상
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민간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교육내용 및 실시횟수 [시행령 제10조의2]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방법 [시행령 제10조의2]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교육 결과보고 [시행령 제10조의2]

- 교육실시 기관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과제출을 생략 가능)

자살예방교육 안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행정기관 등 대상 자살예방교육 안내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1 법적근거 및 교육대상

-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10조제2항
- 각 기관별 직군(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 및 모든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행정기관 등

①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분류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② 공공기관(당해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알리오 지정기관 기준),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설립현황 기준), 특수법인* 등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2 교육내용 및 횟수

-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중 연 1회 이상 실시
※ 의무교육 대상은 '25년 교육 결과 제출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전체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목록 (붙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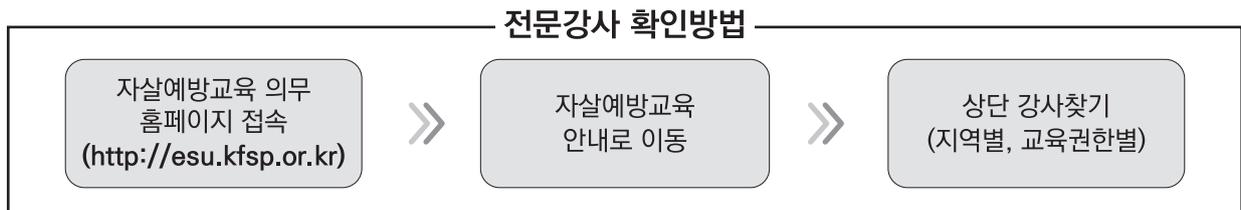
3

교육방법

1. 전문 또는 기관 강사교육 (붙임1)

외부 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 전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로 등록교육*을 보유한 기관에서 양성된 기관강사 (개발기관 직접 문의 후 강의 요청 필요)

* 등록교육 :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교육의 경우, 복지부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교육으로 인정됨)

2. 자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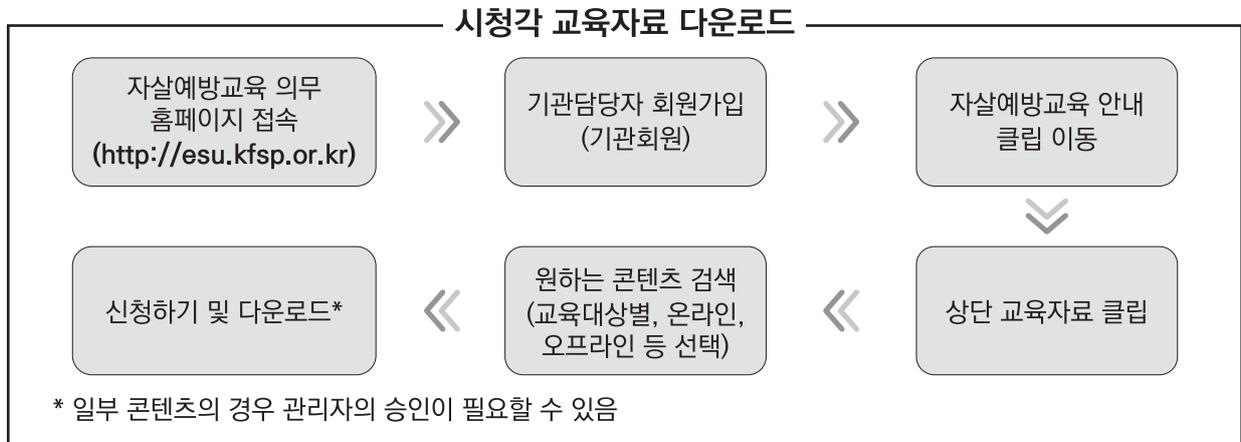
기관 내 내부직원이 시청각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하거나,
사내강사양성과정 수료 후 직접 대면교육 실시

※ 자체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만 가능 (생명지킴이 대면교육은 외부강사 섭의를 통해 진행)

(1) 시청각 교육

- 기관 내 교육 담당자가 복지부(재단) 교육자료(교육영상·지도서)를 활용하여 교육 진행
- 교육 담당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되는 지도서를 활용하여

시청각 교육 진행(단순 영상 시청이 아닌 교육생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 유도)



(2) 사내강사 대면교육

- 기관장 또는 내부직원이 재단의 사내강사양성과정을 수료 후 대면교육 또는 이에 준하는 비대면 교육(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2024년 사내강사 양성과정(안)〉

- (교육일정) 9월~11월 (총 2차 예정)
- (활동범위) 재직 중인 기관 및 단체에 한해 인식개선교육만 강의 가능
- (강사양성과정) 사전 온라인 이론교육(1시간)+대면 실습교육(5시간)
- (자격유지) 수료 후 자격 재직기간까지 (단, 매해 보수교육 수료 필요)

3. 온라인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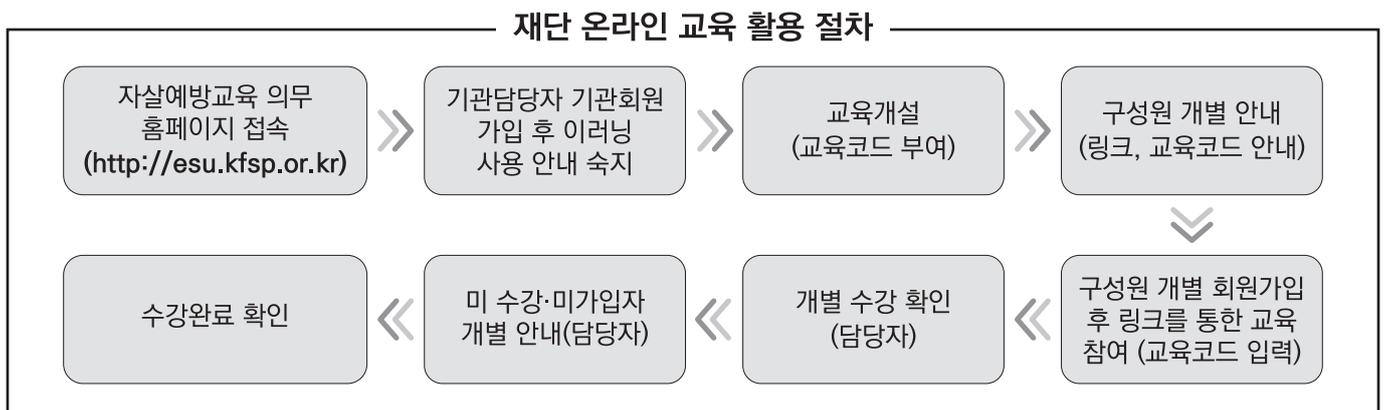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생 수강 관리가 가능한 교육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1) 공공 온라인 교육 시스템 등 활용

-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등 기관 내부 교육 시스템 (LMS) 활용 * <https://logodi.nhi.go.kr/> (공공기관 종사자 나라배움터)

(2) 재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

- (교육대상) 기관단체 수강을 희망하는 기관
- (신청절차) 재단 담당팀(교육관리팀)과 사전 협의 후 사업장 전용 온라인 교육 페이지 개설



4 결과보고

- (제출방법) 각 기관의 소속된 모든 직원의 교육실시 결과를 각 기관별 시스템 내 입력 ☞ <https://edu.kfsp.or.kr>
- (제출기한) 각 사업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2026년 1월까지 자살예방 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보고내용) '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보고

* 교육명, 기관구분, 교육대상인원, 교육이수인원, 교육일시, 교육 방법, 강사명

부록

붙임1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자살예방방법론에 의거하여 아래 기관에서 보급하고 양성된 강사에 한하여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며, 그 외 기관의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아래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 후 교육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근거: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양성된 전문강사

→ 전문강사 찾기 경로: ①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접속(edukfsp.or.kr)→ ② 자살예방교육 안내 → ③ 강사찾기

2. 등록교육 보유기관 → 세부내용은 각 개발기관 문의

	개발기관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1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gwmh.or.kr:446/	033-251-1970
2	경기도자살예방센터	https://www.mentalhealth.or.kr/	031-212-0437
3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gnmhc.or.kr/	055-239-1400
4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hmt.or.kr/	062-233-2468
5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gbcmhc.or.kr/	062-267-5510
6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www.gumimind.com	054-444-0199
7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www.bsmhc.com	051-246-1981
8	부산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beautymind.or.kr	051-638-2662
9	서울시자살예방센터	http://www.suicide.or.kr/	02-3458-1000
10	성남시자살예방센터	https://www.smhc.or.kr	031-780-7000
11	수원시자살예방센터	http://m.csp.or.kr	031-214-7942
12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wjmhc.or.kr	063-262-3066
13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https://ispc.or.kr	032-468-9917
14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061mind.or.kr/main.do	061-350-1700
15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s://www.jbmhc.or.kr/	063-251-0650
16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jejumind.or.kr/	064-717-3000
17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chmhc.or.kr/	041-633-9183
18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www.cbmind.or.kr	043-217-0597
19	화성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hsmindestep.or.kr	031-305-5151
20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https://kpwee.kr/Center	053-326-9275
21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ttps://chingusai.net/xel/	02-745-7942
22	(주)CNS	http://www.crisisnego.co.kr/main	-

※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복지부 (예비·본)인증을 취득한 교육 또는 재단의 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임

□ 성인(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 교육자료 (총 42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9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청각	온라인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청년)	60	○	○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성인)	60	○	○	○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형	120	○		○
보고듣고말하기 2.0 노인편	60	○		○
보고듣고말하기 2.0 청년편	60	○		○
보고듣고말하기2.0 중장년편	60	○		○
이어줍인(성인용)	60	○		
이어줍인(직장인용)	60	○		
이어줍인(노인용)	60	○		

② 광역 및 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대면교육자료 (28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일반 2.0
	생명사랑을 위한 ‘마음에 온(ON)’ 노년층 2.0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나.비효과(나와 너로부터 비롯된 효과) 성인(청년) ver.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해U?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교사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자살예방 응급요원 교육 * 자살예방 지킴이 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자살 예방 전문가 양성교육
강원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 · 통장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세상살이」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경상남도 중·장년층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4050그대에게’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전라북도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교육 ‘소중한 숨’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기본형]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소중한 숨'[단축형]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사랑톡톡65+'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이어달리기(성인용)
	생명이어달리기(노인용)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생명배달'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요즘어때?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지구대
부산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존중약국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노인생명존중교육 생명충전기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	노인 우울 및 자살사고 경계선 집단프로그램 마음지팡이
성남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생명지킴이양성교육 '이심전심' (노인용)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행복키움 Thank You 프로그램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중·장년층)
	자살예방 주민참여 프로그램(노년층)

③ 민간 등 기관 개발 교육자료 (5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대구학생자살예방센터	청소년 생명존중 부모교육 : 우리 아이가 자해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통일부 하나원, 한국자살예방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20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사용 보고듣고말하기(게이트키퍼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 무지개돌봄
(주)CNS	자살시도 중재협상 프로그램

□ 특수직군 대상 교육자료 (총 12종)

① 복지부 개발 교육자료 (2종)

프로그램명	시간 (분)	교육방법		
		대면	시 청 각	온 라 인
응급의료종사자대상 자살관련 교육	120분	○		
연예 관련 종사자 대상 자살예방 교육	60분~120분	○		

② 시·도 및 민간기관 개발 교육자료 (10종)

개발기관	프로그램명
한국자살예방협회, 육군본부	육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A
한국자살예방협회, 해군본부	해군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KN
한국자살예방협회, 해병대사령부	해병대를 위한 보고듣고말하기 1.9ROKMC
한국자살예방협회, 공군본부	공군을 위한 보고 듣고 말하기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공무원 동료 게이트키퍼 훈련 프로그램 뽐!뽐!뽐!(구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내근직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화재구조편)
소방청, 한국자살예방협회	소방공무원을 위한 보고듣고말하기(구급편)
이지앤웰니스, 경찰청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전직원용)
이지앤웰니스, 경찰청	경찰동료 생명지킴이 교육프로그램 (관리자용)

참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시행규칙 별도 규정 없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00000호, 7. 12 공포)
<p>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p>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p>	<p>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p> <p>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p>

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진담공무원

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및 같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4. 「치매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종사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 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살문제와 현황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단체·단체·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단체·단체·시설 내에 게시

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